

##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 관한 고찰

김 희 길\*

- 
- I. 서론
  - II.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
  - III.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 관한 유의점
  - IV. 결론
- 

주제어 : Incoterms 2010, 보험계약조항, 보험자, 피보험자

### I. 서 론

Incoterms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에서 ‘국내 및 국제무역거래조건의 사용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 규칙(Incoterms®201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으로 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사용되어지고 있다.

---

\* 동명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10년 만에 새롭게 개정된 것은 그동안 무역환경변화 및 무역거래에 관계되어진 국제규칙의 변경·수정 등에 부응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거래자에게 국가 간 상거래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제거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본다. 여러 분야의 개정 가운데 특히, 보험관련 부문에 있어서도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사이엔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된 부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이들 변화내용에서 유의점이 있는지 고찰하여 보았다.

국가 간 상거래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기본서류인 해상적하보험증권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자(수출업자)이든 매수자(수입업자)이든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 간 상거래를 해 나갈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선박에 의존하는 특수성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sup>1)</sup>는 반드시 해상보험계약조건의 핵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험계약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첫째,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을 할 것인지 둘째, 위험담보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위험담보조건의 문제 셋째, 보험가입금액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즉 보험금액의 문제 넷째, 보험기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관한 보험자 책임기간의 문제<sup>2)</sup> 다섯째, 보험사고시 보험금 수령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를 즉, 보험수익에 대한 피보험자 설정의 문제가 보험계약내용의 핵심이 된다고 본다.

Incoterms 2010에서는 이러한 핵심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화 된 부문도 있고 전혀 규정화 되지 않은 사항도 있어 여기에 관하여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해상적하보험계약은 영국의 해상보험법(MIA), 국제언터라이팅협회의 협회적하약관(ICC), 우리나라의 상법 보험편 등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료에 이르기

1) 영국의 해상보험법(MIA)이나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법 보험편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표기 하였다.

2) 이 보험기간의 문제는 해상적하보험약관에서 구약관은 제1조 수송약관(창고간약관포함)으로 하였으나, 신약관은 제8조에서 보험기간으로 규정화 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거래되는 물품이 매도자의 창고를 떠나 매입자의 창고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위험을 담보하므로 사실상 운송도중의 위험이 보험기간 내에서만 발생되면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갖는다. 이 조항의 명료화는 보험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까지의 계약내용을 대부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내용을 규율하는 영국의 해상보험법·협회적하약관과 국내법사이에는 용어의 사용 또는 계약조건상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sup>3)</sup> 이로 인하여 국내의 무역거래자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 무역거래자가 단지 Incoterms상의 보험계약조항에 의거하여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다면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간과하므로 인해 예기치 않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Incoterms 2010에서 보험계약과 관련된 유의점을 도출하여 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인 방법을 택하였다. 이 분야에 관하여 그동안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전반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보험계약조항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II.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

### 1. 개관(概觀)

국가 간 상거래시에 보험계약은 필수적인 사항이며, 적하보험증권은 국제대금결제과정에서 운송서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제매매계약의 과정에서는 주계약인 매매계약과 이에 부수된 종속계약들이 있는 다면적인 계약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약체계내에서 그 한 요소로 Incoterms가 있으며, 여기에 보험과 관련한 계약조항이 있다. 보험계약과 관

---

3) 예를 들어, 해상적하보험의 실무에서 보험조건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화물의 경우 원피(Raw Hide, Raw Skin)의 경우 구협회적하약관의 A/R이나 신탁협회적하약관의 A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도 COOC, Hook & Hole(H/H) 및 Sweat & Heating은 보상하지 않으며, 추가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담보된다. 그리고 비료의 경우는 A/R·A조건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 보험조건에 제한이 있는 화물 이외에도 보험자별로 손해를 관리 또는 위험인수상의 문제로 화물별 혹은 보험계약자별로 인수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구협회적하약관의 전위험담보(A/R)라는 명칭이 주는 상징성은 보험계약자에게 위험담보에 혼란을 초래케 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사유들이 신탁협회적하약관의 A조건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는 사유가 되었겠지만, 보험조건은 결국 보험자·보험계약자·관련법규가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문제라고 본다.

련한 가장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 협회적하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이것을 반영한 국제적 관련 규칙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계약에 관련한 Incoterms 2010 규칙은 2009년 개정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을 반영한 최초의 개정판이며, 1982년의 신협회적하약관이 2009년에 LMA<sup>4)</sup>/IUA에 의하여 개정됨으로써 Incoterms 2010 규칙은 2009년 개정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규칙의 매도인의 의무(A)와 매수인의 의무(B)에서 보험계약 관련 규정인 A3 b)/B3 b)에서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였다.<sup>5)</sup>

즉 각 규칙에서 “매도인(매수인)은 매수인(매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위험 및 비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매도인(매수인)의 보험관련 정보제공의무를 두고 있다. ICC, Incoterms® 2010 Rule, 11개 규칙 A3 b). 매도인과 매수인의 보험부보에 정보제공의무는 상대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가령 CIP규칙은 매도인이 부보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의 정보제공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규칙들은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가 있다.<sup>6)</sup>

Incoterms®2010 규칙은 국제엔터라이팅협회의 적하보험약관(ICC)이 개정된 이후로 첫 번째로 개정된 Incoterms이므로 그러한 협회약관의 개정부분을 많이 참조하였다. Incoterms®2010 규칙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정보제공의무를 A3/B3조에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Incoterms 2000의 A10/B10 조에서 볼 수 있는, 보다 새롭게 생성된 조문들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보험에 관한 A3/B3조의 용어는 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무를 분명히 한다는 견지에서 역시 수정되었다. ICC는 2010년부터 이를 상표로 등록하여 “Incoterms®2010”으로 표기하고 있다.<sup>7)</sup>

---

4) 로이즈보험자들을 위하여 1909년 설립된 로이즈보험자협회(Lloyd's Underwriters Association)는 로이즈시장협회(LMA)로 개편되었다.

5) 전순환,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p.580.

6) 김종철,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적 시사점”, 관세학회지(제11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0, p.92.

7) 서정두, 「2010년 개정 Incoterms INCOTERMS ® 2010」, 청목출판사, 2011, p.10.

## 2. Contract of insurance의 변경 내용

		2000	2010
EXW FCA FOB FAS	매도인의 의무	No obligation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if any),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매수인의 의무	No obligation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CIP CIF	매도인의 의무	The seller must obtain at his own expense cargo insurance as agreed in the contract, such that the buyer,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shall be entitled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and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or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 The insurance shall be contracted with underwriters or an insurance company of good repute and, failing express agreement to the contrary, be in accordance with minimum cover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or any similar set of clauses. The duration of insurance cover shall be in accordance with B5 and B4. When required by the buyer, the seller shall provide at the buyer's expense war,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 risk insurance if procurable. The minimum insurance shall cover the price provided in the contract plus ten percent (i.e.	The seller must obtain at its own expense cargo insurance complying at least with the minimum cover as provided by Clauses (C)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The insurance shall be contracted with underwriters or an insurance company of good repute and entitle the buyer,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  When required by the buyer, the seller shall, subject to the buyer providing any necessary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seller, provide at the buyer's expense any additional cover, if procurable, such as cover as provided by Clauses (A) or (B)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and/or cover complying with the Institute War Clauses and/or Institute Strikes Clauses(LMA/IUA) or any similar clauses. The insurance shall cover, at

		110%)and shall be provided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a minimum, the price provided in the contract plus 10%(i.e., 110%) and shall be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The insurance shall cover the goods from the point of delivery set out in A4 and A5 to at leas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with the insurance policy or other evidence of insurance cover. Moreo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if any),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매수인의 의무	No obligation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eller to procure any additional insurance requested by the buyer as envisaged in A3 b).
DAT DAP DDP CFR CPT	매도인의 의무	No obligation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if any),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obtaining insurance.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the buy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seller must provide the buyer, at the buyer's request, risk and

			expense(if any), with information that the buyer needs for obtaining insurance.
	매수인의 의무	No obligation	The buyer has no obligation to the seller to make a contract of insurance. However, the buyer must provide the seller, upon request,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obtaining insurance.

###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Incoterms 2000에서는 EXW, FCA, FOB, FAS, DAT, DAP, DDP, CFR, CPT 규칙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무의무없음(No obligation)”으로 간단하게 표기 하였으나, Incoterms 2010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보험계약조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기한 CIP·CIF조항에서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적어도(로이즈시장협회/국제언더라이팅협회) 신탁회적하약관(C)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서 제공하는 최소담보조건에 따른 적하보험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평판이 양호한 보험인수업자나 보험회사와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은 매수인이나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이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이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수인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면 (로이즈시장협회/국제언더라이팅협회) 협회적하약관의 A 또는 B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 및/ 또는 (로이즈시장협회/국제언더라이팅협회) 협회전쟁약관<sup>8)</sup> 및/ 또는 협회동맹파업약관

8) 신탁회전쟁약관은 제3조 면책조항(일반면책약관)에서 「The Underwriters waive any breach of the implied warranties of seaworthiness of the ship and fitness of the ship to carry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destination, unless the Assured or their servants are privy to such unseaworthiness or unfitness.」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불내항 또는 부적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제한시키고 있다. 구협회전쟁약관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것 역시 매도자나 매입자가 갖는 정보와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기타 그와 유사한 약관에 의하여 부보하는 등의 추가보험을 제공하여야 한다.<sup>9)</sup> 보험금액은 최소한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즉 매매대금의 110%)이어야 하고,<sup>10)</sup> 보험의 통화는 매매계약의 통화와 같아야 한다. 보험구간은 A4 및 A5에 규정된 인도지점으로부터 적어도 지정목적항/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이나 기타 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추가보험을 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을 반영시키고 있다. 그리고 매수인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A3 b)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요청하는 추가보험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4. 정보제공에 대한 명시화

개정된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보험계약체결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사항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의무와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 측의 주된 의무에는 크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가 있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계약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이고,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성립 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보험사고발생시 이 두 가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로부터 면책되게 된다. 결국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지급여부는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의 내용은 보험계약자 측이 보험자가 요구하

---

9) ICC(1982)가 도입된 지 25년이 경과한 2006년에 런던의 국제언더라이팅협회(IUA)와 로이즈시장협회(LMA)의 합동적하위원회(Joint Cargo Committee: JCC)는 1982년 협회적하약관(ICC)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여 3년 동안의 준비과정과 세계적인 자문을 거쳐 2009년 1월1일자 ICC(A), (B), (C) 및 그에 부수하는 전쟁약관과 스트라이크약관을 공표하였다.

10) 보험실무적으로는 송장가액에서 110%를 초과하는 금액도 보험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는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서 Incoterms 2010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 내용이 된다. Incoterms 2010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각 조건별로 다르다. 즉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각각 다르므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단일한(자기를 위한 보험)형태가 될 수도 있고, 간접적인 정보제공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타인을 위한보험) 보험 형태도 될 수 있다.<sup>11)</sup> 이 경우는 정보제공의 명확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Incoterms 2010에서는 보험계약조항에서 정보제공에 대한 점을 11가지 규칙에서 명문화시켰다고 본다.

## 5. 협회적하약관과 관련된 사항

개정된 협회적하약관과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을 검토하여 보면 구협회적하약관 제1조 수송약관(창고간약관 포함)과 제2조 수송종료약관이 신탁회적하약관에서는 보험기간(DURATION, 제8조)으로 단일화 하여 사실상 보험자의 책임기간(위험기간)을 명료화 시켰다. 실무적으로 보면 주계약인 매매계약에 종속된 계약으로 해상적하보험계약이 체결되지만 사실상 보험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다.

Incoterms 2010의 11가지 조항에서, 수출자에게 부과되었던 위험분기점과 관련하여 그간 FOB, CFR, CIF 조건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위험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이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이 기준으로 인하여 그동안 무역업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점에 관하여 개정된 Incoterms 2010에서는 본선의 난간 대신 물품의 본선적재로 변경하여 위험분기점의 명확성을 기하였다.<sup>12)</sup>는 내용은 결국 위험분기점이 선측 난간이든 선복 적재이든 보험기간 내에서 또는 보험기간을 벗어나 발생한 보험사고이냐가 핵심적인 쟁점사항이라고 본다. 이 점과 관련하여 신탁회적하약관은 제8조에서 보험기간을 독립적인 조항으로 두어 명료화 시켰다고 본다.

11)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부담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은 CIP, CIF 조건인데, 이 조건은 결국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형태가 된다. 이 경우 보험계약과 관련한 정보제공에 있어 즉,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12) 강진욱, “Incoterms 2010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과 유의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1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0, p. 73.

Incoterms 2010에서 해상, 육상, 항공, 복합운송 등 운송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EXW, FCA, CPT, CIP, DAT, DAP, DDP 등 총 7가지이다. 이 조건들은 해상운송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조건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운송수단의 일부로 해상운송이 사용되는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FAS, FOB, CFR, CIF 는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운송지점은 반드시 항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과 보험계약을 연관시켜 보면 결국은 선택된 조건에서 물품의 운송 중 발생된 보험사고는 보험기간(책임기간, 위험기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 Ⅲ.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 관한 유의점

#### 1. 독립계약성

무역거래자는 주된 계약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종속된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상으로 보험계약은 '전형계약(典型契約)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無名契約), 즉 독특한 계약(contractus sui generis)으로서 독립계약이라 한다.<sup>13)</sup> 이러한 성질을 가진 보험계약에 대하여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은 단지 보험계약체결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 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보험가입조건 등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즉, Incoterms는 물품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매매계약에 관련이 있는 운송, 보험 및 금융계약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sup>14)</sup>

Incoterms는 완전한 매매계약을 제공하지 아니함을 유념하여야 한다. Incoterms는 계약당사자간의 운송이나 보험계약의무, 물품의 인도시기, 당사자 간의 비용분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금의 한도와 지급방법,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위반의 결과 등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sup>15)</sup> 이러한 문제는 매매계약의 명

13) 양승규, 「보험법 제4판」, 삼지원, 2002, p. 90.

14) 서정두, 전게서, p.10.

시조건이나 준거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각 Incoterms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매매계약의 어떠한 측면보다도 행위지의 강제적인 국내법이 우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sup>16)</sup>

## 2. 피보험이익에 관한 문제

CIP·CIF조건의 매도자의무에서 “보험은 매수인이나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or any other person having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to claim directly from the insurer.)”에서, 운송중인 화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증권을 취득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하자가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 내용은 해상적하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상적하보험증권이 전전유통(轉轉流通)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보험증권을 소지하는 피보험자가 화물을 수취하는데 법규적인 하자가 없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결국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에서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보험계약관련 정보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정보는 보험의 목적물에 관련한 것과 이에 관련한 고지의무와 위험의 변동 등에 따른 통지의무라고 볼 때 정보제공자와 보험사고시 보험금 수취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공된 정보의 적법함이 결여될 때는 화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 보험금 청구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 3. 보험계약당사자에 관련한 유의점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을 위한 국제규칙인 Incoterms는 그 자체가 국제적인 통일법이나 조약과 같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단지 ICC에서 표준화한 정형거

15) 보험조건을 선정할 때에는 거래조건, 위험담보의 범위, 보험료, 화물의 성질, 포장상태, 전부보험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6) 서정두, 전게서, pp.277-278.

래조건에 대한 해석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Incoterms는 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Incoterms 2000보다 Incoterms 2010이 보험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세분화하고 충실하게 규정하였다고 하지만 보험계약이 갖는 특수성 자체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은 미흡하다고 본다.

Incoterms 2010에서 매도인의 보험부보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1개 조건 중 CIP, CIF 뿐이다. EXW와 F조건은 매수인이, D조건은 매도인이 부보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각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보하는 것이지 Incoterms상의 의무조건은 아니다. CIP와 CIF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필요한 정보제공의 경우는 결국 타인을 위한 보험형태인데, 이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보험계약당사자에 관한 점인데, 영국의 해상보험법 및 협회적하약관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용어로 표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급되고 있는 해상적하보험증권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구분없이 피보험자로만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시키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상법은 고지의무 또는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 형성권(形成權)으로서 보험자에게 보험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의 수익자자인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일 경우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에 관련한 정보제공자의 책임사항에 관하여 언급이 없다.

## 4.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관점

### 1) 고지의무에 관한 점

보험계약성립 전 의무인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실시하는 위험측정과 동시에 선의계약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측에게 요구하는 것임으로,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자에 대하여 간접의무로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Incoterms 2010의 11개 조항에서 매도자에게 보험계약체결의무를 지우는 2가지 조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에 관

련한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sup>17)</sup> 이 경우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와 고지의무에 관한 정보제공을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즉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유는 영국 보험법 상 의무위반의 요건과 관련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표시를 행할 당시 보험계약자의 주관적인 내면상태, 즉 의무위반과 관련한 보험계약자의 인지 여부 또는 과실 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의 개입 없이 단순한 과실 또는 선량한 실수에 기인해서도 의무 위반으로 귀결된다.<sup>18)</sup>

우리나라의 법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형성권(形成權)으로써 보험계약해지권을 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국내의 무역업자들은 보험계약체결을 국내법에 의하여 하고 있으며, 국내법은 보험계약자 측과 보험자 측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있다.

## 2) 통지의무에 관한 점

보험계약성립 후 의무인 통지의무 중에는 해상적하보험에서 위험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위험의 변동사항을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일 경우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겠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보험일 경우 통지의무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유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Incoterms 2010은 이 점 역시 간략하게 정보제공에 관한 의무로만 명시하고 있다.

---

17) 보험증권에 기록되는 사항으로 assured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고시 보험금 수취인이다. applicant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보험계약자이다. CIF·CIP계약의 경우 assured, applicant 모두 매도인의 이름이 기재되고 이후 피보험이익의 양도를 전제로 보험증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게 된다. 신용장상에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assured로 은행명이 기재되기도 한다(증권상에 있어서 은행이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하주가 수취하고자 한다면 은행의 지급동의서를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통지의무의 이행여부가 문제시 된다.

18)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 상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동향”,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2.

## 5. 영국의 해상보험법·협회적하약관과 국내법과의 상이점

부산고법 1997.11.17. 선고95나12392 판결문에서(부산고법 1997.11.17. 선고95나12392 판결: 확정[보험금][하집 1997-2,178])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계된 내용상의 법리(法理) 즉, ①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② 그 손해는 전보해 주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전보하는 손해인가? ③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위반, 손해방지의무위반 등은 없었는가? ④ 그와 같은 의무위반이 없다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가 과연 정당한 청구권자인가 하는 4가지 사항 즉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만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하여 결정하고,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 및 효력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영국의 법과 관습을 적용할 수 없고 한국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어떤 나라들은 자국의 수출자들에게 국내보험업의 육성을 위해 국내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정책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sup>19)</sup> 특히 이 점과 관련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가 우리나라의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국내법에 의하여 구속되어지고 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시하는 것처럼 해상적하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일국(一國)이 아닌 이국(二國) 이상에 걸쳐 있고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종료까지 영국의 해상보험법(MIA), 협회적하약관(ICC), 우리나라 상법 등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복잡성을 지닌다.<sup>20)</sup>

## IV. 결 론

국가 간 상거래에서는 물품의 운송중에 발생할 수 여러 가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해상적하보험이다. 무역거래자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하지만, 이러한 위험회피 뿐만 아니라 무역서류를 구성하여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도 해상적하보험이 필요되어진다.

19) 오세창, “Incoterms®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8. p.13.

20) 김희걸, “소급보험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p.146.

보험자가 발급하는 해상적하보험증권에는 담보되는 위험도 완전하게 반영되어야 하지만 무역서류로서의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계약과 관련한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 보험계약은 무역계약에서 종속계약으로 체결되어지지만 계약 자체는 완전히 독립적인 계약이다. Incoterms 2010은 11가지 계약조항에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의무를 가질 것이며, 또한 보험계약체결시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하는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Incoterms 2000 보다 Incoterms 2010 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시적인 사항도 보험계약의 독립성이나 특수성에 견주어 볼 때 그렇게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결국 보험계약도 매매계약에서 차지하는 상품 원가 중 보험료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이 원가 부문을 누구에게 전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상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보다는 보험료부담의 경감을 염두에 둔 매매자간의 책임소재의 공방 때문에도 Incoterms에 보험계약조항을 명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상품의 운송도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실제적 손해를 부담하는 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결국 상품에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 점이다. 영국의 해상보험법(MIA)과 협회적하약관상의 피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둘째, 보험계약성립 전 의무인 고지의무와 보험계약성립 후 의무인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대리인 모두가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가 위반될 경우 보험자는 형성권으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으로부터 면책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험계약체결시 매대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보험계약관련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성이 Incoterms 2010에 담보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부문도 상품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가 정확하게 판단하여 인수한 정보를 고지 또는 통지의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계약의 독립성에 유념하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보험계약자체를 독립적인 계약으로 인식하고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위험담보조건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Incoterms 2010의 보험계약조항은 보험계약의 관념적

이고 개략적인 안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진욱, “Incoterms 2010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과 유의점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1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0.
- 김종철,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 및 실무적 시사점”, 「관세학회지」 (제11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0.
- 김희길, “소급보험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5.
- 서정두, 2010년 개정 Incoterms INCOTERMS® 2010, 청목출판사, 2011.
-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 상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동향”,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2.
- 양승규, 보험법 제4판, 삼지원, 1998.
- 오세창, Incoterms 2000의 실무적 해설, 삼영사, 2002.
- \_\_\_\_\_, “Incoterms®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무역상무연구」 제5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8.
- 전순환,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 최명국,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상의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2.
- 최석범, “Incoterms 2010의 당사자별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 한국국제상학회, 2010.
- 허재창,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2.
- Entry into force: 1 January 2011,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world business organization*
- Incoterms 1990  
\_\_\_\_\_ 2000
- Incoterms®201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CC, 2nd Draft of Incoterms 2010, ICC Commission on Commercial Law and

Practice, 2009.

J.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00, ICC Publishing SA, 1999.

\_\_\_\_\_, ICC Guide to Incoterms®2010, ICC Services Publication, 2010.

## ABSTRACT

### A Study on the Clauses of Insurance Contracts on Incoterms® 2010

Kim, Hee Kil

Incoterms is a standard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which is established to provide goods delivery, cost and risks between the seller and the buyer as a principle concerned. Incoterms is made of international rules about regular uses of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 It removes uncertainty of misunderstanding and applying rules, commercial customs and etc, between nations.

Incoterms does not have an enforcement like an unified rules or an agreements established between different nations. Therefore, it is just considered as a standard formal terms and conditions from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For those reasons, validity of Incoterms applies only when parties of contract come to an agreement not by officially adopted or applied by law in each nation.

Incoterms 2010 contains specific and clear articles which is fixed version of incoterms 2000, it has insufficient points on insurance contract article. Though, insurance contract belongs to sales contract, it sustains independence itself. It is difficult to sustain perfection until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ntract and expiration by fixing the article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for sellers and buyers take a full responsibility of making complete insurance contract. This paper is written for those reasons in this filed.

Key Words : Incoterms 2010, Clauses of Insurance Contracts, Insurer, Insured Person.